

2024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23-167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1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(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”)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대상 : (재)마포복지재단

나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

다. 출연 필요성

-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재산 및 인건비, 운영비 등의 보통재산 출연 지원
- 다양한 주민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필요
- 지역자원 총량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모금·배분사업 추진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지원 강화

라. 출연금액 및 내용

- 출연금액 : 4,267,068천원
- 출연내용 : 재단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(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) 지원
 - 기본재산 : 1,500,000천원
 - 보통재산 : 2,767,068천원
 - 인건비 771,259천원, 운영비 및 사업비 380,614천원, 호도밥상 사업비 1,615,195천원

【 출연금 내역 】

(단위: 천원)

구분		예산액	세부내용	비고
합계		4,267,068		
복지재단 기본재산		1,500,000	• 기본재산 적립	
복지재단 보통재산		2,767,068		
복지재단 운영	인건비	771,259	• 기본급여, 제수당, 퇴직급여충당금	
	운영비 및 사업비	380,614	• 공공요금 및 제세, 회의운영비, 사무용 경비 및 자산취득비 등 • 복지재단 홍보 및 나눔활성화 사업,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및 수탁시설 운영 등	
	효도밥상 사업비	1,615,195	• 반찬공장 운영 및 효도밥상 급식비 등	

※ 출연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, 2024년도 사업예산(안) 결정

3. 참고사항

○ 관련규정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
(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)

4. 연도별 출연현황

(단위: 천원)

회계연도	출연금			비고
	계	기본재산	보통재산	
2023년	1,525,564	1,000,000	525,564	
2022년	999,181	500,000	499,181	
2021년	2,106,235	2,000,000	106,235	